[불임 12] 채용공고문

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직원 채용 공고

"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"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
2021년 9월 16일

경기요양병원장

I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

□ 근무기관 :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* :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-4

□ 채용예정인원 : 총 1명

*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

□ 채용직급 직렬 및 근로조건

- 공무직(요양보호사) 1명
 - * 계약기간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근로자
 - * 근무형태(기관운영상 근무형태 변경 가능)

구 분	근무형태		근무시간 및 휴게시간
요양보호사	○1일근무 2일휴무	07:30~익일07:30	○근무시간 16h, 휴게시간 8h' ⋆ 야간 휴게시간 4h

* 보수수준 : 월 1,952천원 수준(세전, 식대포함 금액이며, 상여 및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름)

Ⅱ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

- □ 채용방법 : 공개채용
- □ 전형절차: 용시원서 접수 → 서류전형(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"응모자격"에 대한 요건 심사) →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 → 서류검증 → 최종

- 1 -

합격자 발표 → 임용후보자 등록 → 임용

Ⅲ 응시자격

□ 공통 응시자격 (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-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([붙임 1-1] 참조)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([붙임 1-2] 참조)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
 - ※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악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낼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(10년)
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연령요건 : 만 60세 미만

□ 채용직군별 자격요건

직 렬	응 시 자 격
요양보호사	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

*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

Ⅳ 우대사항

-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
-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
- ○『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』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
- ○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
- ○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
-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
- ○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

○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전형절차

접수(자기소개서 포함) 및 서류전형

1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ㆍ접수

○ 접수기간: 2021. 9. 16.(목) ~ 9. 23.(목) 13:00

○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마감 당일 13시까지 도착·수신분에 한함)

○ 접 수 처 : 소속기관 인사담당

소속기관	전화번호	이메일주소
경기요양병원	031-371-5225	gyeonggi9in@kcomwel.or.kr

현 직장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, 포털메일 사용(예. 네이버, 다음, 지메일 등)

○ 제출서류 : 응시원서[붙임 2-1], 자기소개서[붙임 2-2], 내신성적 확인서[붙임 2-3]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

[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]

- ① (메일제목) 응시원서 제출(홍길동·경기요양병원·요양보호사) ② (붙임 PDF파일명) (홍길동·경기요양병원·요양보호사)
- ◇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PC에서 후 **출력**하여 응시원서 하단 **서명(날인)** 후 스캔 → 1개의 PDF 파일로 변환

2) 서류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: 5배수 (※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)
-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: 응시원서 평가 100점(단, 가점 적용 시 최대 105점)

구분	서류전형(정량평	화 100점 만점)	사회형평요소 우대	
T E	직업기초능력	직무수행능력	(최대가점 5점)	
		○ 직무경력(30점)	○ 장애인, 산재, 의상자(5점)	
요양보호사		() 적작사건(계절)	○ 경에인, 산세, 최정사(3점) ○ 기타(5점)	
		○ 전문자격(20점)		

- *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한가지만 적용
- *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해당분야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

- 3 -

1) ()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평가

- (대학교 이상) '전체평균' 학점으로 점수 평가
-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확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,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
- (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등)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<u>각 1개 교육</u> 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,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

교과구분 영역	교육과목
국어	국어, 국어 I , 국어 II, 문학, 독서와 문법, 화법과 작문, 독서, 언어와 매체 등
영어	영어, 기초영어, 실용영어, 영어 I , 영어 II, 영어독해, 영어작문, 실용영어회화, 영어회화, 영어독해와 작문 등
수학	수학, 수학 I , 수학 II , 미적분, 통계, 자연수학, 기하와 벡터, 수학의 기본, 확률, 통계, 확률과 통계 등
사회	사회, 통합사회, 한국사국사, 사회문화, 법과정치, 세계지리, 한국지리, 세계사, 경제, 경영, 동아시아사, 정치, 정치와법, 윤리, 생활과 윤리, 윤리와 사상, 사회와 윤리 등
과학 또는 전문교과	과학, 통합과학, 과학탐구, 과학탐구실험, 물리(학) 물리(학) [물리(학)], 화학, 화학 [, 화학], 지구과학, 지구과학 [, 지구과학], 생명과학(생물), 생명과학(생물) [, 생물과학(생물)], 생활과 과학, 융합과학, 정보통신, 회계, 회계원리, 전산회계, 컴퓨터 일반 등

- *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(단,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)
- ※ (적용기준) 해당과목의 내신등급, 성취도, 점수구간, 석차, 5등급제가 있는 경우, ①내신등급, ②성취도, ③점수구간, ④석차, ⑤5등급제 순으로 적용기준을 적용

1과목당 배점	6.0	5.2	4.4	3.6	2.8	2.0
내신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~5등급	6~7등급	8~9등급
성취도	A+	А	B+	В	C+,C	D+이하
점수구간	95점 이상	95점 미만 ~90점 이상	90점 미만 ~ 85점 이상	85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
석 차 ((5://총 인원 * 100)	4% 이하	4% 초과 ~ 11% 이하	11% 초과 ~ 23% 이하	23% 초과 ~ 60% 이하	60% 초과 ~ 89% 이하	89% 초과
5등급제	수	-	우	-	미	양, 가

%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(1개 과목은 '내신등급'으로, 다른 1개 과목은 '점수구간'으로 기재 불가)

- ② (직무경력)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,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
- ☞ (합격 이후 증빙서류 제출필요)

, 경력증명서(원본)

- ③ (전산자격)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 1급·2급, 워드프로세서(구 1급)
- ④ (전문자격) 해당 자격증 소지자

구분	항목
요양보호사	- 사회복지사 1급·2급, 간호조무사

※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※ 모든 전형의 응시자격, 학교성적, 직무경력, 전문자격,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

3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1. 9. 24.(금) 예정 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

2. 및 증빙서류 제출

1) 면접전형

- **대상자 :** 서류전형 합격자
- 일자: 2021. 9. 28.(화) ~ 9. 29.(수) 예정
- 면접장소 : 경기요양병원
- *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
-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: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(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, 100점)
-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(의사소통, 대인 관계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직업윤리 등), 직무수행능력(공단이해도, 직무이해도, 지원 동기 및 자기개발) 등 평가
 - * NCS 기반 직무기술서는 [붙임 3] 참조
- 면접점수가 평균 50점(100점 만점) 미만 시 부적격 처리
- 인성검사
- (실시일자 및 방법) 면접전형 당일 별도 장소에서 PC로 실시
- (검사내용) 자기조절역량, 도덕역량, 대인관계역량 등을 파악

- 5 -

2) 중빙서류 제출 목록(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)

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, <u>채용 관련 중빙</u>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(면접전형 직후) 직접 제출

구분	제 출 서 류
공통 사항	① 해당 채용분야 면해지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뷔석·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학년 상적증명서 1뷔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• 편입의 경우,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• 학점은행제의 경우,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• 전공심화의 경우,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• 전공심화의 경우,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뷔남지에 한하며, 병역사항 기재된 것)
해당자에 한함	①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(국가보훈) 대상자 증명서 ② (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)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(자녀일 경우 기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③ (장애인) 장애인복지카드 사본(앞, 뒷면) ④ (의사상자)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(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⑤ (생활보호대상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⑥ (경력단절여성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려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 ⑦ (다문화가족)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(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),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) ⑧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(직무경력)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⑩ (직무경력) 해당직군 업무 관련 경력증명서(퇴직한 경우) 또는 자직증명서(재직증인 경우) ⑩ (전산가점) 정보화자격증 사본 ⑩ (전문가점) 채용공고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서류

- ※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지참
- ※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<u>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(제출일 기준)</u>로 한하여 인정.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

3.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

1) 최종 합격자 결정

O (선발기준) 서류검증 결과 및 인성검사 결과 결격(부적격) 사유가 없고, 가산 점수를 제외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(100점 만점)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O 최종 합격자 발표: 2021. 9. 30.(목) 예정 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

2)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

O 임용등록기간: 2021. 9. 30.(목) ~ 10. 7.(목) 예정

O 임용등록시 제출서류: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

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

3) 임용일: 2021. 10. 13.(수) 예정

※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임용기간은 합격자발표 후 1년으로 한다.

Ⅵ 채용 이의신청

○ 신청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

- 신청방법: '채용 이의신청 양식'(붙임 4)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
- 이의신청 예외대상
-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-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피해자 구제
- 이의 신청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 가능

- 7 -

Ⅵ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'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' 사항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공공기관 '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'에 따라 '자기소개서'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 에서 연령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명,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-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모든 공공 기관에 제입사가 불가능하며,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부정합격자에 따른 채용 비위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「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
- 공무적의 경우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후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,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-1] 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-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하전후견인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진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하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6의4.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65조 및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- 8. 징계에 의하여 피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- 9.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관정된 자
- 10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1.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9 -

[붙임 1-2]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하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66초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료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94. 미성년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